

1. 개정이유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도시 지정신청사항 구체화(안 4조의2 신설)

- 1) 시장·군수 등이 제출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해당 지역 온천 현황, 관련 추진실적, 차별화된 시책, 투자 재원 조달, 추진체계 및 주민 협업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0. 10. 18. ~ 11.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 이용인원, 온천이용시설 현황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실적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사항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와 주민, 온천관계자, 전문가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4조의2(온천도시의 지정신청)</u> <u>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u> <u>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u> <u>다.</u> <u>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u> <u>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성분,</u> <u>이용인원, 온천이용시설 현황</u> <u>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u> <u>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실적</u> <u>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u> <u>화된 시책에 관한 사항</u> <u>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u> <u>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u> <u>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u> <u>체계와 주민, 온천관계자, 전문</u> <u>가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u> <u>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사항</u>